

##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원재활용 운영 사업외 13 건인

7,733,365,950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 12 건) 7,546,385,950 원
- 사고이월 ( 2 건) 186,980,000 원
- 계속비이월 ( 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